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해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374호, 2023.4.18. 공포, 2024.4.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위탁 교육기관을 정하는 한편,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의 비핵심 기능을 민간 또는 타 기관에 개방·이관하여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개방·이관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화물차의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를 통해 화물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별로 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지정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절차별 기한을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개정)

나.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교육 운영실적 등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 개정 및 안 제44조의4 신설)

다. 현재 노선버스에만 한정된 운행기록의 주기적 제출 대상을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은 대형화물차로 확대(안 제45조제3항 개정)

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위탁·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우수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안 제48조 및 안 제48조의2 개정)

마. 교통안전 전문교육 위탁 교육기관을 국토교통부 및 시·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공 교육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정함(안 제48조의3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국무조정실 사전 심사 요청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작성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전년도 6월 말까지”를 “작성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종합·조정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6월 말까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을 “종합·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립하여 매년 10월 말까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에 따라 수립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2월 말까지 확정하여”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각각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10월 말까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각각 다음 연도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에 따라”로, “12월 말까지 수립”을 “수립”으로 한다.

제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교통안전담당자 교육기관(이하 ‘교통안전담

당자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각각 “교통안전담당자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4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4(교통안전담당자 교육기관) 시행령 제44조의3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3.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교육 운영실적 등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제45조제3항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 운행기록 제출 대상 차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한정한다.

제48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48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교통안전 전문교육 기관) 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 및 시·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3.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공교육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및 제48조의2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u>작성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전년도 6월 말까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제10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 ----- ----- ----- <u>작성하</u> <u>여</u> ----- ----- -----.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u>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② ----- ----- ----- <u>국토교</u> <u>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에 따라</u>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2항의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을 <u>종합·조정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6월 말까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을 종합·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u>	③ ----- ----- ----- <u>종합</u> <u>·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u> <u>호의 사항을 검토</u> ----- ----- <u><후</u> <u>단 삭제></u>

다.

1. ~ 4. (생략)

④ (생략)

제12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12월 말까지 확정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각각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10월 말까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에 따라 수립하여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확정하여 그 결
과를 -----
-----.

제13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에 따라 -----

-----.

③ (생략)

제14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등은 각각 다음 연도의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①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연도 교육일정 및 장소 등 계획을 수립해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12월 31일까지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에 따라 -----

----- 수립-----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①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교통안전담당자 교육기관(이하 ‘교통안전담당자 교육기관’이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교통안전담당자 교육기관---

-----.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년도 교육인원 등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교육 과목·내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해서 공고해야 한다.

<신 설>

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①·② (생략)

④ 교통안전담당자 교육기관-----

-----.

⑤ -----

----- 교통안전담당자 교육기관-----.

제44조의4(교통안전담당자 교육기관) 시행령 제44조의3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3.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교육 운영실적 등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말한다. <단서 신설>

제48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2. (생략)

<신설>

3. ~ 6. (생략)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① 국토

③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 운행기록 제출 대상 차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한정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 -----

-----.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① ----

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생략)

2.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3. 4. (생략)

② ~ ④ (생략)

<신설>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의3(교통안전 전문교육 기관) 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 및 시·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3.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공교육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865